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18 - 1185 호

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에 의거 정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에게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안전기준위반에 대한 정비명령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제 목 : 자동차관리법위반 정비명령 안내서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18. 12. 14. ~ 12. 28.(15일간)
3. 공고대상

고지종류	과세대상
정비명령안내서	강** 외 1명

4. 기 타

- 가. 2008.06.22.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시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최고 75%까지 부과됩니다.
- 나.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- 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(☎02-330-162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. 12. 14.

서대문구청장

